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1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 개정이유

- 이중으로 운영되던 “구미시에바란다”와 “구미시전자민원창구”의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통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를 세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이버민원실 명칭 변경
 - 사이버민원실 ⇒ 전자민원창구
-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범위 세분화
 -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추가

☐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인터넷민원”을 “전자민원”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제3장 제목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제8조내지제11조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인터넷”을 “전자”로 한다.

제9조 제목중 “인터넷”을 “전자”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인터넷”을 “전자적 민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생략)	제2조(현행과 같음)
4. <u>인터넷민원</u> -----	4. <u>전자민원</u> -----
5~6(생략)	5~6(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생략)	제3조(현행과 같음)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3. <u>사이버민원실</u> -----	3. <u>전자민원창구</u> -----
제6조(생략)	제6조(현행과 같음)
②1~9(생략)	②1~9(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u>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u> <u>게시한 경우</u>
제3장 --- <u>사이버민원실</u> ---	제3장 --- <u>전자민원창구</u> ---
제8조(<u>사이버민원실</u> --)	제8조(<u>전자민원창구</u> --)
①-- <u>인터넷</u> -----	①-- <u>전자</u> -----
-- <u>사이버민원실</u> --- <u>사이버민원실</u> ---	-- <u>전자민원창구</u> --- <u>전자민원창구</u> ---
② <u>사이버민원실</u> -----	② <u>전자민원창구</u> -----
제9조(<u>인터넷</u> 민원처리)	제9조(<u>전자민원처리</u>)
① <u>인터넷</u> -----	① <u>전자적</u> 민원-----
② <u>사이버민원실</u> -----	② <u>전자민원창구</u> -----
제10조(생략)	제10조(현행과 같음)
②----- <u>사이버민원실</u> ---	②----- <u>전자민원창구</u> ---
제11조(생략)	제11조(현행과 같음)
①-----	①-----
<u>사이버민원실</u> -----	<u>전자민원창구</u> -----
② <u>사이버민원실</u> -----	② <u>전자민원창구</u> -----